

알고 계십니까?

대법원은 1876.1.17에 최초 개정된 후, 동년 4월에 비로소 첫 재판을 실시, 같은 해 6월에 1주간 개정하여, 3건의 사건을 심리하였으며, 다음해 1월부터 정기적인 개정과 함께 본격적인 대법원 심리에 착수하였습니다.

총독이 사망하거나 업무수행이 불가할 경우 혹은 한달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 공식인 경우에는 대법관이 캐나다의 통치자로서 총독의 모든 권한을 대행합니다.

대법관은 총독이 임명하며 75세까지 재직가능합니다.

puisne judge: 대법관을 부르는 별칭으로 'puisne'는 어리다는 뜻의 불어 고어로서 대법원장과 나머지 8명의 판사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호칭입니다.

1939.5.19이 새겨진 대법원 건물의 주춧돌은 원래 조지 4세가 놓기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1939.5.20에 조지 4세가 보는 앞에서 부인인 엘리자베스 여왕이 놓았다고 합니다.

대법원 건물 앞에는 2개의 깃대가 세워져 있는데 서쪽은 매일 게양되며, 동쪽은 대법원 개정 기간에만 게양됩니다.

대법원 입구 중앙계단 양쪽에는 IVSTITIA(정의), VERITAS(진실)을 상징하는 3미터 높이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이 동상은 처음에는 에드워드 7세를 기념하기 위해 1920년대에 만들어 졌으나 사용되지 못하고 50년간을 주차장에 묻혀 있다가 1969년에 발견된 후 1970년이 되어서야 대법원 정문에서 빛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빨강색 가운데 흰 캐나다 밍크로 장식한 대법관복은 대법관 취임식, 총독의 의회 개원연설 등 특별한 경우에만 착용합니다.

대법원 연락처

인터넷 사이트
www.scc-csc.gc.ca

일반 문의사항
이메일: reception@scc-csc.ca
전화: 613-995-4330
1-888-551-1185

우편주소
The Supreme Court of Canada
301 Wellington Street
Ottawa, Ontario K1A 0J1

투어정보 및 예약
이메일: tour-visite@scc-csc.ca
전화: 613-995-5361
1-866-360-1522



캐나다 대법원



Korean/ coréen

역사

캐나다 대법원은 모든 소송에 관한 캐나다의 최고 법원으로서 1875년 의회법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이후 상당기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영국의 추밀원 사법위원회에 상고 가능하였으나, 이러한 상고제도가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1933년,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1949년 폐지되면서 대법원은 이후 캐나다의 최고 법원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장 1명, 법관 5명으로 시작된 대법원은 1927년에 대법원장 포함 7명, 1949년부터는 영국 추밀원 사법위원회에 대한 상고제도의 폐지와 함께 현재와 같이 총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대법원법에 따라 9명의 대법관 중 3명은 퀘벡주 출신으로 임명하며 나머지 대법관은 온타리오주에서 3명, 서부지역 주에서 2명, 대서양연안 주에서 1명을 총독이 임명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대법원은 초기에는 캐나다 의회 내 회의실 등 일부 공간을 사용하다가 1882년에 의회 근처 Bank Street 2층 건물로 이주하였으며, 1938년에 이르러 현행 대법원 건물의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적 유산으로 지정된 현재의 대법원 건물은 몬트리올 출신의 유명 건축가 Ernest Cormier가 설계하였으며, 의회 왼쪽편으로 오타와 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41년 완공 직후 한동안 전시 정부 청사로 사용되었으며 1946년에 비로소 대법원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건물 내부는 그랜드홀, 대법정, 법관실, 회의실, 사무실, 도서관, 연방법정, 연방항소법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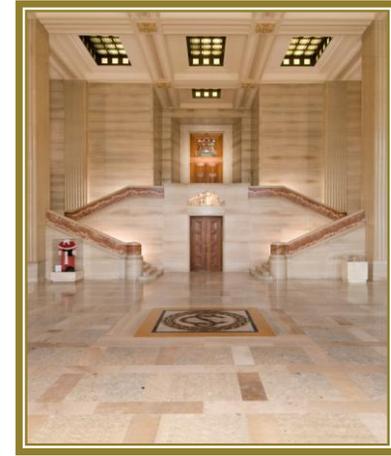
대법원의 심판권

대법원은 연방항소법원, 군법회의항소법원 및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고되는 사건을 다루는 캐나다의 최고법원입니다.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은 연평균 500-600건 정도로 이중 일부는 반드시 심리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먼저 헌법상 및 법률해석상 중요한 문제가 있는지, 사회적 중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상고허가를 받은 경우만 대법원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심리제도

대법원은 동계, 춘계, 추계의 3기로 나누어 연평균 65-80건을 심리하며 일반인도 관람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심리는 일반적으로 여름을 제외한 평일 월-금 오전 9:30부터 오타와에 소재한 대법원에서 열리며, 원거리에 거주하는 소송인들을 위한 화상심리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심리에는 최소 5명의 대법관이 출석해야 하며 통상 7-9명의 대법관이 참여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심리 직후 구두로 발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세한 판결문을 통해 최종 심리결과를 알립니다. 최종 판결은 반드시 만장일치일 필요는 없으며 심리를 담당할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다수와 소수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판결이유는 영어, 불어로 인쇄하여 보관하며 인터넷에도 게재됩니다.

대법원 방문 안내

방문 시간

5월-8월: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오전 9시-오후 5시
(단, 12시~1시 사이는 제외)
가이드 투어 상시 가능

9월-4월: 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
단체 방문 연중 가능

가이드 투어 예약 방법

홈페이지 양식 작성 www.scc-csc.gc.ca
전화 613-995-5361/1-866-360-1522

가이드 투어가 예약된 경우라도 대법원 사정에 따라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